

교원업적 평가규정

제정 : 1997. 6. 10.

개정 : 2026. 8. 31.

주관부서 : 연구처 연구혁신 1팀

유관부서 : 교무처 교무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조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제2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0.13., 2013.10.17., 2018.2.28.〉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

[제목개정 2000.10.13.]

제3조(평가구분 및 기간) 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8.31., 2026.8.31.〉

[제목개정 2026.8.31.]

1. 교무처 소관 :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산학협력실적 〈신설 2026.8.31.〉
2. 연구처 소관 : 학술논문, 저서(문예창작물을 포함한다), 공연전시,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학술상 수상 〈신설 2026.8.31.〉
- ②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업적과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 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1.12.6., 2010.8.31., 2013.10.17., 2026.8.31.〉
- ③ <삭제 2026.8.31.〉
- ④ <삭제 2026.8.31.〉
- ⑤ <삭제 2026.8.31.〉
- ⑥ <삭제 2026.8.31.〉

제3조의2(교무처 소관 업적 평가절차) ① 교원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뢰된 산학협력실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④ 총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실적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⑤ 교무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31.]

제3조의3(연구처 소관 업적 평가절차) ① 교원은 제3조제1항제2호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연구처에 제출한다.

② 연구처는 제출된 업적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다만, 저서 및 공연전시 실적은 연구혁신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연구혁신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의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④ 총장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업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⑤ 연구처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8.31.]

제4조(연구혁신심의위원회)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8.31., 2026.8.31.>

[제목개정 2010.8.31., 2026.8.31.]

제5조(업적의 인정) ①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업적은 결과물 제출 시 발간 연월일을 기준하여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 급여 등과 같이 이미 결정 처리된 사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8.31.>

② 업적 내용이 동일하거나 명백히 유사한 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0.8.31.> <개정 2011.8.31.>

제6조(이의신청)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로 정해진 기간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1.8.31., 2026.8.31.>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업적평가 결과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8.31.>

③ 재심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번호개정 2026.8.31.>

④ 교무처장 또는 연구처장은 소관 업적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31., 2026.8.31.> <번호개정 2026.8.31.>

제7조(보직인정) 보직교원의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보직수행에 대한 점수를 추가로 인정 하며, 인

정점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 보직의 경우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2.>

제3장 평가 방법

제8조(계열구분) 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인의 학문적 특성상 소속 대학 및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관 업적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6.30., 2008.9.10., 2010.8.31., 2011.8.31., 2013.4.2., 2013.10.17., 2026.8.31.>

제9조(교육업적) ① <삭제 2010.8.31.>

②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31., 2013.4.2.>

제10조(연구업적) ① <삭제 2010.8.31.>

②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③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가. 논문의 경우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 \times 2$

(3) 공동연구(참여) : $\{1/(n+1)\}$

(4) 본인포함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본인포함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2019.10.24.>

나. 논문 이외의 실적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세부책임, 참여) : $1/n$

2.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6인 이상일 경우 n은 6으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개정 2022.10.4., 2026.8.31.>

3.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7., 2016.2.24., 2024.8.12.>

가.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1명의 경우 1명을 제외,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6.8.31.>

나. SCI급(SCIE, SSCI, A&HCI, SCOPUS),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술지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외국기관으로 표기한 저자가 1인 이상 참여한 경우 1명을 제외하며 교

원의 역할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실 연구자 수가 4인 이상일 경우 n은 4로 산출한다. <개정 2025.11.11., 2026.8.31.>

다.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라. 본인이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고 동일한 역할로 표기된 다른 저자가 없는 경우, 그 기여율이 40% 미만이라도 40%로 인정한다. <신설 2026.8.31.>

4.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5.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나. 실 연구자 수 :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간주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2017.12.29., 2024.8.12.>

6. 역할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나.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다.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마.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7.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8. 예·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9.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2026.8.31.>

10.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봉사업적) ① 봉사업적의 평가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로 구분하며 교외봉사는 전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7.20.>

② 봉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5과 같으며, 봉사활동 최대 인정점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6.5.1., 2007.7.20., 2010.8.31., 2013.4.2.,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④ <삭제 2013.10.17.>

⑤ <삭제 2013.10.17.>

⑥ <삭제 2013.10.17.>

제4장 업적평가기준에 대한 정의

제12조(학술논문) ① 모든 논문은 체제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2.6.10.,

2002.12.18, 2007.2.7., 2010.8.31.> <번호개정 2010.8.31.>

③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학술지를 분야별·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2.12.18., 2003.9.1., 2007.2.7., 2010.8.31., 2011.8.31., 2013.10.17.> <번호개정 2010.8.31.>

1. 형식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특히 우수하거나,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술지 등의 등급조정은 연구혁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31.>

2. 국내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3. 국외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④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간된 논문만을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되, 탈락된 학술지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논문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8.31.>

제13조(문예창작물) ① 문예창작물의 경우 문예창작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ISBN(ISSN)이 부여된 전국규모의 전문 문예창작지에 게재된 창작물로서 별표 4[문예창작]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0.12.8., 2013.10.17., 2022.10.4.>

② 연재된 창작물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하며, 기준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③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10.8.31.]

제14조(저서) 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출판 저작물(ISBN을 부여받은 서적)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한국문화정보센터에 등록된 저서에 한하여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외저서의 경우 외국어로 저술하고, 국외 출판사에서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8.31.>

② 개정(증보)판은 기 출판된 저서 내용을 30퍼센트 이상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서등급 기준점수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역서의 경우 원서 전(前)판이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초판 번역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8.31., 2012.9.7.>

1. 학술서 중 기 인정받은 논문(문예창작물)이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 발간한 저서

2. 이미 다수의 작가에 의해 번역된 문예창작품 번역(기 번역본 존재)

③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한다.

④ 저서 인정범위 <개정 2011.8.31., 2013.2.19.>

1. 학술서 :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일관된 체계에 의해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저술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것으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

2. 전공교재 : 대학교 이상의 전공강의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회화교재, 강독교재 제외)

3. 일반교재 : 외국어 회화교재, 교양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실습교재 및 시청각 매체(강의용), 초·중·고 검인정(국정)교과용도서

4.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

- 가. 전문번역 :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고전자료나 전문학술서를 충분한 학문적 축적을 통해 역주하거나, 자신이 전공하는 문학작품을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제하고 번역한 책
- 나. 일반번역 :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외국학술서의 완역서 및 단순한 문학작품 완역서
- 5. 편저서 : 평가대상자가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문예창작물을 묶어 학술적인 의미로 편술한 서적
- 6. 사전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새로 편찬된 각종 사전
- 7. 주석, 교열본 : 원본에 대하여 내용이나 문자 상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자나 편차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출판한 도서
- 8. 학술자료집 : 전공분야의 학술자료, 학술색인집 또는 컴퓨터 DB, 시청각 자료 등(ISBN의 구매를 받지 않음)
- 9. 문예창작집 : 문예창작물을 묶어 출간한 서적 또는 단행본으로 해당전공의 언어로 출판한 작품집을 말하며 초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어문계열교원에 한하여 인정함
- 10. 교양서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기초로 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

[전문개정 2010.8.31.]

제15조(학술발표) ① 학술대회 발표는 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등이 아니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3명 이상의 주제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를 말하며, 초록집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논문을 두 번 이상 발표한 경우 한 번의 발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이 발행되어 발표논문(Full Paper)이 수록된 경우 학술발표논문, 초록집 및 프로그램에만 등재된 경우 초록 및 구두 발표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③ 학술회의에서 사회, 좌장 및 토론 참가자는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2.7.]

제16조(지식재산권) ① 해당 교원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서 대학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국제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 인정받은 점수를 차감한 잔여점수만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0.8.31., 2013.10.17.>

② <삭제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07.2.7.]

제17조(외부수탁연구) ① 외부수탁연구는 정부, 외부기관에서 수탁하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해외파견 또는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1., 2011.8.31., 2013.10.17.>

② <삭제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④ 외부연구비 수혜액은 해당 연도 우리 대학교에 입금된 연구비(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2013.10.17.>

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주도의 주요과제 기획 및 집필 등을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라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10.8.31., 2009.3.1., 2013.10.17.>

⑥ 외부연구비를 수혜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이 외부연구과제협약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 불이행시 계열구분 없이 해당 과제로 인정받은 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제17조2(기술이전) ① 기술이전 실적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세부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② <삭제 2013.10.17.>

제18조(진료활동) ① 임상교원의 진료의욕 고취 및 병원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하며, 진료활동 점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원장이 산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6.8.31.>

② 교무처에서는 산출된 점수의 합산점수를 진료활동 점수로 인정한다.

③ 진료활동 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1. 각 과의 진료수입 : 각과 진료수입/교수수 → 해당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2. 각 교수의 지정진료실적 : 병원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부여
3. 전공의 수/교수 수 : 각 과별 전공의 수를 교수 수로 나누어 해당 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4. 병원장 평가 : 병원장의 별도기준에 근거하여 등급부여
5. 병원행정기여도 : 의치과 대학 및 병원의 보직 활동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의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점수 부여

제19조(공연전시) ① 예체능계열의 교원이 자신의 작품을 공연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발표(CD발매 미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발표한 것에 대한 팜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발표의 목적, 구성, 작품설명 등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연전시 실적 개요서를 제출하여야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연실황을 담은 현황 CD(DVD)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2.18.,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② <삭제 2010.8.31.>

③ <삭제 2010.8.31.>

④ 인정되지 못한 장소, 기준에 미달되는 실적은 기타 업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⑤ 동일한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음악, 무용, 연극영화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공연은 시기와 관계없이 1회,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0.12.8., 2019.10.24.>

⑥ 순회공연의 경우 1건만 인정한다. <개정 2010.8.31.>

⑦ 종교활동 및 교육활동(학생들 연주회의 지휘, 졸업발표 등) 업적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종교활동 중 오르트리오, 칸타타 등 음악연주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소에 상관없이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10.8.31.>

⑧ 평가대상자의 연구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31.> <개정 2009.3.1.>

제19조의2(학술상 수상) 학술상 수상은 국제학·예술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 대학 및 사회단체에서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수여한 상을 말한다. <신설 2007.2.7.>

제20조(증빙자료) 업적 증빙자료는 웹정보시스템에 파일(PDF, 스캔파일 등)로 첨부한다. 다만, 저서 또는 공연전시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2013.10.17., 2017.12.29.>

제5장 평가결과의 적용

제21조(적용) 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 연구년제 교수선정,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0.8.31.>

제22조(평가영역 간 대체 인정) [본조삭제 2010.8.31.]

부칙(1997.6.10.)

이 규정은 1997.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8.)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5.)

이 규정은 1998.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이 규정은 개정. 부터 시행하되, 2002. 9.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9.1.)

제1조(적용) “제12조의 2항 2호” 및 “별표2(연구업적평가기준) 논문 중 국내대학학술지B 및 국내학술지C”는 2003.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7조의 규정은 해당 보직자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원연구업적평가시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보직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동일보직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06.1.26.)

제1조(적용) 개정규정 제10조(연구업적) 제3항 2호는 2006. 9.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제1조(경과조치) ① 제7조(보직인정)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보직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의 보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4조(저서)는 2006.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제1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10조 및 <별표2> 연구업적평가기준은 2006. 9.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제1조(경과조치) ① 제12조(학술논문)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5조(학술발표)는 2007.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지식재산권)는 2007. 3. 1. 이후 출원되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7조(보직인정)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직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1조(봉사업적)는 2007. 9. 1.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직수행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칙(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별표1)의 교원업적 평가기준은 2009. 9. 1. 승진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09.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9조(교육업적)는 2010. 3. 1. 이후 교육업적부터 적용한다.

③ 제16조(지식재산권)의 평가점수는 2011. 3. 1. 이후 출원되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보직인정은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개정 규정 제10조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저서)는 2011. 3. 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② 2010. 3. 1. 이후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저서)는 2011. 03. 0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② 2010. 03. 01 이후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2013.3.1.일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11.)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30.)

이 규정은 201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6.)

이 규정은 2017. 2. 16.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2018.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28.)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 1]은 2018. 9. 1.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1]의 2018. 8. 31.까지 보직 인정점수는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9.2.27.)

이 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 7]은 2019.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0.2.27.)

이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12.17.)

이 규정은 2021.12.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별표4] 연구업적 평가기준 【일반논문】가중치 적용기준은 2024.3.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1.)

이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1] 보직 인정점수는 2023.8.26.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2.29.)

이 규정은 2024.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8.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별표4] 연구업적 평가기준 【일반논문】가중치 적용기준 4는 2024.9.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9.2.)

이 규정은 2024.9.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0.)

이 규정은 2025.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규정 제10조제3항제3호제나목, [별표2] 계열 구분, [별표4]의 일반논문 및 저서 연구업적 평가기준은 2026.3.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6.2.24.)

이 규정은 2026.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개정 규정 [별표7]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 기준은 2026.3.1.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규정 [별표2] 계열 구분은 2026.9.1.부터 적용한다.

③ 이 개정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 내지 제3호 및 [별표4] 연구업적 평가기준 【일반논문】 국제 학술지A 인정기준은 2026.9.1.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 ④ 이 개정 규정 [별표1] 보직 인정점수는 2027.3.1.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직 인정점수(2027.3.1.부터)

<신설 2013.4.2.> <개정 2013.10.17., 2016.8.30., 2018.11.1., 2019.2.27., 2019.10.24., 2020.2.27., 2022.10.4., 2022.12.1., 2023.10.30., 2024.8.12., 2024.9.2., 2025.11.11., 2026.8.31.>

보직 및 인정점수
[연 300점]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학장, 본부 실·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교육혁신원장, 디지털정보원장, 산학협력단장, 의료원장, 의과대학부속병원장, 치과대학치과병원장, 치과대학죽전치과병원장, 치과대학세종치과병원분원장
[연 150점] 도서관장, 박물관장, 단국역사관장, 평생교육원장, 글로벌교육센터장, 단국미디어센터장, 생활관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의과대학부속병원부원장, 공공의료본부장, 충남지역암센터장,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실·부장, 부학장, 부처장, 교육혁신원 산하 센터장
※보직 후 점수 1. 인정기간 : 보직해제 후 실제 보직수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되, 보직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만 인정하며, 인사명령의 ‘보’와 ‘면보’를 기준으로 한다. 2. 점수의 적용 : 현 보직과 보직 후의 적용 기간이 중복 되는 경우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동일한 점수일 경우는 현 보직을 우선한다.
※ 보직인정 점수 산출식 : $[(\text{보직일수} \div 365) \times \text{보직인정연점수}]$

※ <삭제 2018.11.1.>

[별표 2] 계열 구분(2026.9.1.이후 임용된 신규교원부터, 기존교원은 2027.3.1.이후 승진 또는 승급시
점부터 적용)

<신설 2013.4.2.> <개정 2013.8.24., 2014.2.28., 2014.6.11., 2015.4.1., 2016.2.24., 2017.2.16., 2020.2.27.,
2024.2.29., 2025.2.20., 2025.11.11., 2026.8.31.>

계 열		대학(원)/학부/학과
인문 계열	가 그룹	문과대학,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외국어대학
	나 그룹	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사회계열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특수교육과,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 과, 해병대군사학과, 식품자원경제학과, 보건행정학과, 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 과, 국제경영학과, 한국학과
자 연 계 열	가 그룹	고분자시스템공학부,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제약공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동물생명공학전공, 약학과 ²⁾ , 의생명 과학부, 코스메디컬소재학과, 바이오소재융합공학과
	나 그룹	과학교육과 ³⁾ , 건축공학전공, 전자전기공학과, 융합반도체공학과, 인프라건설공학과, 기 계공학과, 모바일시스템공학과, 물리학과, 식량생명공학전공, 환경원예학전공, 의예과(기 초), 치의예과(기초),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경영 공학과 ⁵⁾
	다 그룹	수학교육과 ⁴⁾ , 수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심리학과 ¹⁾ ,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¹⁾ ,
	마 그룹	건축학전공, 녹지조경학전공
의·치·의학계열 (임상)		의과대학(임상), 치과대학(임상),
예능계열		음악·예술대학, 미술학부, 뉴뮤직학부, 연기영상예술학과
체육계열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대학,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기타		그 밖의 교원(교직교육과,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자유교양대학, 글로벌기초교 육학부 등)은 해당 계열에 준하여 구분

※ <삭제 2017.2.16.>

※ <삭제 2014.6.11.>

※ <삭제 2017.2.16.>

¹⁾ 2024. 2. 29. 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은 사회계열로 적용함

²⁾ 임상약학 전공자는 인문계열(가)로 적용함

³⁾ 과학교육 전공자는 인문계열(가)로 적용함

⁴⁾ 수학교육 전공자는 인문계열(가)로 적용함

⁵⁾ 경영학 계열 전공자는 사회계열로 적용함

[별표 3] 교육업적 평가기준 : 연평균 170점 필수(학기당 85점) (2013.3.1.부터)

<개정 2010.8.31., 2013.4.2., 2013.10.17., 2014.6.11.>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소 항 목(기준)
교육활동 (40+ α)	책임시간 충족	40+ α	· 부족 시 1학점당 -5점 · 초과 시 1학점당 +2점(최대 6점까지)
	야간수업 (학부, 대학원)	보너스점수 + α	· 1과목당 +2점(한 학기 2과목까지)
	수강학생 규모		* 교양 및 학부(학과)기초 교과목 수강학생 150명 이상시 +2점과 매 75명 증가 마다 +2점 * 전공교과목 수강학생 80명 이상시 +2점과 매 40명 증가마다 +2점
	영어 강의		한 강좌당 : +2점
	교수학습개발 및 참여실적		· 매 실적당 +2점(최대 6점, 교수학습개발센터 자료)
강의평가 (30)	강의평가 내용	30	· 개인별 강의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평균점수 $\times 6$
행정사항 (30)	강의계획서 입력(학부)	10	· 강의계획서 미입력 또는 일정 불이행 : 1강좌당 -5점
	티칭포트폴리오 이행(학부)	10	· 티칭포트폴리오 불이행 : 1강좌당 -3점
	성적관련 입력 기간 준수 여부	10	· 성적공시제도상의 일정 불이행 : 1 강좌당 -5점 · 학생민원 미대응 등 : 1건당 -5점
계		100	

※ 2013. 2. 28.까지 교육업적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

[별표 4] 연구업적 평가기준

<개정 2010.8.31., 2010.12.8., 2011.8.31., 2013.2.19., 2013.4.2., 2013.10.17., 2016.2.24., 2017.2.16., 2017.12.29., 2018.11.1., 2022.10.4., 2024.2.29., 2024.8.12., 2025.11.11., 2026.2.24.>

【일반논문】(2026.9.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3.4.2., 2016.2.24., 2017.2.16., 2017.12.29., 2022.10.4., 2024.2.29., 2024.8.12., 2025.11.11., 2026.2.24., 2026.8.31.>

평가구분		인 정 기 준	기준점수
국 내 학술지	A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 <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50
	B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KCI 검증 완료 시 인정>	100
	C	A, B 이외에 ISSN이 부여된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전문학회(기관) 이외에서 상업적 목적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음	50
	D	특정학문분야의 심도 있는 학술논문만을 묶어 편찬된 국내 전문학술도서 중의 한 개의 장	50
국 제 학술지	A	국제저명학술지 * A&HCI, SSCI, SCIE 등재 저널 중 해당학문분야 JIF RANK 상위 1%이내(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전 JCR값을 적용)	2,000
	B	A&HCI 등재학술지	600
	C	SSCI 등재학술지	450
	D	SCI, SCIE 등재학술지	300
	E	SCOPUS 등재학술지 <대학정보공시의 SCOPUS 정규논문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200
	F	A&HCI, SSCI, SCI, SCIE, SCOPUS 등재학술지에 준하는 학술지 Medline Index 등재학술지 OECD가입국가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G8국가의 대학에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그 밖의 국제학술지 A,B,C,D,E 등급에 준하는 학술지 특정학문분야의 심도 있는 학술논문만을 묶어 편찬된 국외 전문학술도서 중의 한 개의 장	75
	G	CS(Computer Science)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300

■ 가중치 적용기준 ¹⁾

1. 국제학술지(SSCI, SCIE,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적용기준

구분	구간별 가중치				
	4배	2.5배	2배	1.5배	1.25배
*SSCI, SCIE	JCR IF상위 5% 이내	JCR IF상위 5%초과 ~ 10%이내	JCR IF상위 10%초과 ~ 20%이내	JCR IF상위 20%초과 ~ 30%이내	JCR IF상위 30%초과 ~ 50%이내
연구재단 지정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	-	IF 4	IF 3	IF 2

* SSCI, SCIE : 주제별 분류(Subject category) IF(Impact Factor) 비율(%)은 JIF RANK를 기준으로 하며, 논문 게재년도 기준 직전 2년전 JCR값을 적용(Subject category 중복 시 가장 우수한 값을 적용)

※ Category 내 저널 수가 15개 이하일 때 JCR IF 상위 10%이내 적용 : 2.5배

2. 국제학술지(SCOPUS) 적용기준

적용계열 : 인문, 사회, 예능, 체육계열
1.25배 (기준점수 250)

3.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적용기준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게재논문
1.2배(기준점수 180)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인정 기준에 따라 KCI검증 시 “우수등재” 로 검증된 학술지에 한하여 적용함

1) 가중치 적용기준

- 제1호, 제3호

가. 2023.2.28. 이전 신규 임용된 교원 : 2024.3.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

나. 2023.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 : 2023.3.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

- 제2호 : 2024.3.1. 이후 연구실적에 적용

■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한 적용기준

1. 적용대상 계열(학과)

계열	학과
자연계열(나)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자연계열(다)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사이버보안학과, 인공지능학과

2.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실적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최근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3. 인정기준

- 인정 : 정규(Regular) 발표논문

- 불인정 : Short 논문, Spotlight 논문, 부속학술대회 또는 워크숍 발표논문, 포스터

- 저자(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 표시를 기준으로 하며, 표기되지 않은 경우 「참여」로 인정

- 업적으로 인정받은 Proceedings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4. 교원업적평가규정 제5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의거 동일(유사)한 논문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5.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방법(기여율, 역할구분 등) 및 평가기준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을 적용함

【문예창작】(2023.03.0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22.10.4., 2026.8.31.>

평가항목	기준	기준점수
시, 단편동화, 수필	1편당	A 25, B 15
평론	1편당 원고지 50매 이상	A 60, B 40
단편소설, 논픽션	1편당 원고지 100매 이상	100
중편소설, 장편동화, 시나리오, 희곡	1편당 원고지 300매 이상	150
장편소설, 서사시	1편당 원고지 1000매 이상	200
※ A급 :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문예창작분야의 국내 전문 문학지(20개 이내)에 게재된 문학작품		
※ B급 : 전국규모의 문예창작지로서 A급 외에 게재된 문학작품		
※ G7 국가의 전문 문학지(발행부수 5,000부이상)에 게재된 문학작품의 경우 기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하여 평가함		

※ 2023.3.1.이후 연구실적부터 이 규정을 적용함

【저서】(2026.3.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6.2.24., 2017.12.29., 2018.11.1., 2025.11.11.>

평가항목			인정기준	점수
저서	학술서	국외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일관된 체계에 의해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저술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것으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	300
		국내		150
	전공교재	국외	대학교 이상의 전공강의 및 대학교재(전공교양)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회화교재, 강독교재 제외)	200
		국내		100
	일반교재	국외	외국어 회화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실습교재 및 시청각 매체(강의용), 초·중·고 검인정(국정)교과서	100
		국내		50
	사전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새로 편찬된 각종 사전	150
	주석, 교열본		원본에 대하여 내용이나 문자상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자나 편차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출판한 도서	50
	학술자료집		전공분야의 학술자료, 학술색인집 또는 컴퓨터 DB, 시청각 자료 등(ISBN의 구매를 받지 않음)	30
	문예창작집		문예창작물을 묶어 출간한 작품집을 말하며 초판에 한하여 인정(기 인정 된 문예창작물 30% 이하 포함인 경우)	150
교양서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기초로 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	50	
역서	전문번역	외역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고전자료나 전문학술서를 충분한 학문적 축적을 통해 역주하거나, 자신이 전공하는 문학 작품을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제하고 번역한 책. (다만, 이·공학, 의·치·약학 등의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외국학술서의 완역도 전문번역서로 인정한다.)	150
		국역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외국학술서의 완역도 전문번역서로 인정한다.)	100
	일반번역	외역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일반서적의 완역. (다만, 일반인들에게 교양서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기존에 여러 차례 번역이 이루어진 한문 고전 번역의 경우 하제와 역주를 포함하였다 할지라도 일반번역으로 인정한다.)	100
		국역		70
편저서	편저서		평가대상자가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문예창작물을 묶어 학술적인 의미로 편술한 서적	50
※ 개정(증보)판은 기 출판된 저서 내용을 30%이상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서등급 기준점수의 50%를 인정				
※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을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되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013. 3. 28. 까지 연구업적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

【학술발표】(2011.03.01 이후 연구업적) <삭제 2013.10.17.>

【연구활동】(2013.03.01 이후 연구업적) <삭제 2013.10.17.>

【진료활동】

평 가 항 목		점 수		
	항 목	A	B	C
진료활동	1) 각과의 진료수입 (A,B,C) (각과 진료수입/교수 수)->해당과 교수에 등급부여	50	45	40
	2) 각 교수의 지정진료 실적	20	17	14
	3) 전공의 수/교수 수(A: 1명이상,B: 0.5-1,C: 0.5명 이하)	10	8	6
	4) 병원장 평가			
	① 각 과의 병원방침 준수 및 적극성	10	7	4
	② 외래 및 특수클리닉 진료 활성화	10	7	4
	③ 환자진료의 적극성(입원, 수술)	10	7	4
	④ 각 교수의 진료수준 평가	10	7	4
	⑤ 환자불만, 의료분쟁 여부, 병원 직원간의 관계	10	7	1
	5) 병원 행정 기여도			
	① 진료부서 보직자(응급센터소장, 외래진료부장, 집중치료부장, 수술부장, 혈액투석부장, 기능검사 실장 및 이에 준하는 부서장)	6		
	② 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의 임상과장	5		
	③ 의과대학 및 병원, 치과대학 및 병원의 제 위원회 위원(장)	3(5)		
	④ 의국장	3		
	⑤ 기타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구체적 사유서 제출)	15		

【건축설계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분야별	평가항목	점수
전국 수준 실적물	국내경쟁 현상설계(당선작)	150
	국내경쟁 현상설계(우수상)	100
	국내경쟁 현상설계(장려상 이상)	70
	국내저명 건축전문지에 게재된 완공작품	100
	국내저명 건축전문지에 게재된 계획작품	70
	전국수준의 권위를 가진 단체에서의 수상작품	100
작품전시회 발표회	초대 개인전	100
	초대 그룹 및 기획전	75
	그룹 및 기획전(일반개인전 포함)	30
● 국내경쟁 현상설계 : 국가건축단체, 문화단체, 국가기관(광역시,도,지방자치단체 포함) 등 공인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거나 승인받은 전국규모의 건축공모전 또는 현상설계를 말함. ● 국내저명 건축전문지 : 건축과 환경(C3), 공간(Space), 건축사, 건축문화, 플러스, Concept, Archiworld 등 이에 동등한 수준의 잡지를 말함. ● 전국 수준의 권위를 가진 단체 : 광역시 및 도 이상의 공공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해당 문화단체에서 시행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수상한 작품(건축학회상, 건축사협회상, 건축가협회상, 새건축사협회상, 건축문화대상(건축사협회주최), 김수근 건축상 등)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건축상을 말함. ● 작품전시회/발표회 : 문예진흥원, 미술관, 문화회관, 아트센터, 화랑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말함. ※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 ※ 현상설계를 통한 작품실적 인정에 관한 기준 현행 건축사법 상 단독으로 응모할 수 없는 일반현상설계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한 계약이 이루어져야하며, 계약서에는 출판, 전시 등과 관련된 저작권은 연구책임교수와 설계사무소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함.		

※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규정을 적용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삭제 2013.10.17.>

【음악분야】(2018.03.0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4.2.28., 2016.8.30., 2017.2.16., 2017.12.29.>

분야별	평가항목	기준시간	점수
개인발표	독창회/독주회/작곡발표회	60분 이상	150
	앨범발표(정식 유통한 단독앨범/정규앨범리더앨범)	60분 이상	150
		30분 이상~60분 미만	100
공동발표	듀오 연주(2인연주)		100
협연	독주악기의 전악장/그랜드 피스 협연 (다만, 국악은 10분 이상 협연 시 인정)		100
	독주악기의 단악장		40
	Two Pianos 및 2중주, 3중주 전악장 협연		50
실내악	3-10중주(기악, 국악)	전체프로그램	70
반주	기악·성악·국악 반주	전체프로그램	50
성악	오페라 주연(전막)		150
	오페라 조연(전막)		100
	오라토리오, 미사, 칸타타 중 독창, 오페라 갈라콘서트		70
	3-4인 연주회	총 연주시간의 1/2이상	70
창작	오페라, 오라토리오, 미사, 무용음악, 창극, 영상/공연 매체를 위한 음악 또는 사운드 디자인 작곡 발표	30분 이상	150
	관현악곡, 관(현)악 합주곡, 칸타타(4곡 이상)	15분 이상	150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인테페이스, 악기 등의 개발 발표(논문 또는 공연)		150
	실내악곡, 합창곡, 연가곡(4곡 이상)	10분 이상	100
	기악독주곡, 어쿠스매틱 음악, 테입 음악	10분 이상	70
	가곡, 보컬곡	3분 이상	50
지휘	시향급 이상의 교향악단, 오페라단, 시립합창단, 국악 관현악단(시립이상)의 집박	전체프로그램	150
	전문 실내악단/전문합창단/집박	전체프로그램	70
기타	기타 음악분야 실적(공동음반CD/DVD발매 포함)		20
※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국제 기타 음악분야 실적의 경우 제외함). ※ 재공연인정 1) 국내 공연 후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 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 ※ 공연장 규모(평가점수 100점 이상일 경우) : 공인된 150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교내 연주홀은 제외함) (다만, 국악 및 실용음악계열 교원의 경우 공인된 120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 ※ 음반 발표는 공연실황레코딩, 스튜디오레코딩, 컴퓨터음악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작업을 담은 작품발표를 말하며 CD, LP, SACD, DVD-audio, Audio, file 등 다양한 매체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정식 유통되는 정규앨범을 말함.(기존에 업적을 재사용한 앨범은 표절로 인정함) ※ 오페라 갈라콘서트는 연주의 비중(역할 및 연주곡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과함. ※ 개인발표의 경우 찬송가(찬송가 편곡포함)가 1/3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 지휘의 경우 전문연주자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연주회 및 특별 연주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기준시간(전체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에 준함), 협연연주단체의 등급(수준), 및 공연장 규모 미달의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부과함. ※ 연주회 CD/DVD제출은 독주회에 한하며, 타 연주회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 <삭제 2017.2.16.>			

※ 2018. 2. 28. 까지 연구업적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

【미술공예·디자인 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6.8.30., 2019.10.24., 2026.8.31.>

분야	평가항목	점수
작품전	1인 전시회(개인전)	150
	2인 전시회	100
	3~5인 전시회	50
	공인된 전시 초대작가 / 추천작가 작품	100 / 50
	공인된 국가기관 혹은 사단법인 협회전(기획전, 교류전)	50
	기타출품전(회원전, 기획전, 소단체의 초대작가전, 기타 단체전)	20
공모전	공인된 공모전(국내외 동상 이상)	100
	공인된 공모전(특선)	50
기획	전시기획(국제인 경우만 인정)	50

※ 모든 항목에서의 최고점수는 150점으로 함 (추가점수 포함)

※ 국제작품전 및 국제공모전인 경우 평가점수에서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
(국제기타출품인 경우 제외함)

※ 작품전, 공모전에 있어서의 추가 점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혁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함

<작품전에 대한 기준>

- 1) 개인전, 2인전, 3인~5인 전시회의 경우, 총 작품 수의 2/3 이상이 미발표 작품으로 구성되어야 인정함
- 2) 공인된 전시 초대/추천작가 작품은 공인된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3) 공인된 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의 개인부스전은 평가점수의 50%만 인정함
(상업적 목적인 아트페어의 개인 및 그룹 부스전은 제외)
- 4) 국제작품전의 경우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학회(협회)가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인정함
- 5) 공인된 국가기관, 사단법인 협회전(기획전, 교류전)의 경우, 참가국이 3개국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제작품전으로 인정함

<공모전에 대한 기준>

- 1) 국제공모전은 OECD국가 중 전공분야별로 공인된 국제학회(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 공인된 공모전이라 함은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 등 최고상이 대통령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기획에 대한 기준>

전시기획의 경우, 참가국이 10개국 이상의 국제규모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함

※ 개인전 발표 장소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함.

- 1)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설립된 '미술관'
(국공립미술관 또는 (사)사립미술관협회 정회원 미술관)
- 2) 화랑 : (사)한국화랑협회에 소속된 전문화랑
- 3) 공공문화시설의 전시장으로서
 - 도/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전시장
(예: 부산문화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경기도 문화의 전당, 부산시민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 도/광역시급 이상의 지자체가 설립한 재단법인시설
(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의 전시장
 - 그 외의 시설로서 전시기획을 담당(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하는 전문직 2명 이상이 상근하거나 학예연구의 기능을 갖춘 곳.
- 4) 외국대사관 문화원 등의 전시 공간
- 5) 미술전문인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전시기획을 담당(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하는 전문직 1명 이상이 상근하는 화랑 및 대안공간
- 6) 정부/광역시 이상의 지자체 혹은 (조형예술분야와 관련된) 사단법인에서 주최/주관하는 예술행사/이벤트에 사용된 공간

※ 온라인(웹) 상에서 전시한 경우, 오프라인 전시의 심사점수의 50% 인정을 기본으로 연구혁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함

* 해외전시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

※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규정을 적용함.

【연극영화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3.10.17., 2016.8.30.>

평가항목	기준시간	평가점수
공연된 작품의 기획, 제작, 창작각본, 연출	40분 이상	150
상영된 작품의 기획, 제작, 창작각본, 연출	20분 이상	150
공연 또는 영상 관련 행사에서 담당분야의 수상작품		150
뮤지컬 음악감독, 뮤지컬 작곡(전곡)	40분 이상	150
예술감독, 보컬코치	40분 이상	50
국내에서 공연 또는 상영된 작품의 기타 제작 참여 - 공연 :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의상디자인, 분장, 안무, 작사, 작곡, 음향, 무대감독, 드라마트루기, 번안, 각색, 번역 등 - 영상 : 프로덕션디자인, 촬영, 조명, 편집, 의상, 녹음, 음향, 음악, 분장, 각색, 번역 등		50
상영된 작품의 연기(주연)	60분 이상	150
공연된 작품의 연기(주연)	60분 이상	100
공연 또는 상영된 작품의 연기(조연)		50
※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 ※ 재공연 인정부분 1)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 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 ※ 개인작품발표에 대한 공연장규모 : 1) 연극(뮤지컬) : 교외의 전문 공연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공연물(객석 수 제한 없음) 2) 영화 : 교외의 전문 상영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상영작 다만, 주최단체가 국가기관 및 전국규모 이상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한 경우 야외공연도 실내 공연과 동일하게 인정함 ※ 기준시간 및 공연장 규모 미달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반영함		

※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규정을 적용함.

【체육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삭제 2013.10.17.>

【무용분야】(2011.03.01 이후 연구업적) <개정 2016.8.30.>

평가항목	기준시간	점수
개인작품 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60분 이상	150
수상작품의 예술감독, 연출 안무		150
무용제 초청공연 및 단독 프로그램의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100
2인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70
3인 이상 작품발표회 예술감독, 연출, 안무		50
기타 무용분야 실적		20
※ 국제인 경우 평가점수의 최대 50점까지 추가로 인정함(국제 기타 무용분야 실적의 경우 제외함) ※ 재공연 인정부분 1) 외국에서 재공연인 경우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1회 인정 2)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1회 인정 ※ 개인작품 발표회에 대한 공연장규모 : 객석의 규모가 150석 이상의 규모 다만, 주최단체가 국가기관 및 전국규모 이상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한 경우 야외공연도 실내 공연과 동일하게 인정함 ※ 기준시간 및 공연장 규모 미달 실적인 경우 평가점수의 50% 반영함		

※ 2010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규정을 적용함.

[별표 5] 봉사업적 평가기준(2025.03.01. 이후 봉사업적)

<개정 2010.8.31., 2010.12.8., 2013.4.2., 2013.8.24., 2016.8.30., 2021.12.17., 2025.2.20.>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년간)
교내 봉사	교무위원	20
	부학장, 부원장, 부처장, 부속기관장, 연구소장, 센터장	15
	병원 기획실장, 교육부장 및 진료부장	15
	치의학과 소속교원으로 병원 진료 활동	15
	학과장(주임교수), (부)학부장, 의과대학 실장, 치과대학 실장	15
	교과목 PD	15
	교내 위원회 위원(상설 위원회 당)	10
	교내 위원회 위원(한시 위원회 당)	5
	발전(장학)기금 기여(유치실적 포함) : 1천만원당 2점(최대 50점)	4
	입학처 등 대학 주관 입학유치 홍보 참여(1회당 2점)	2
	학장이 추진하는 단과대학 단위의 사업·행사·회의 참가(1회당 2점) (학장 확인서 제출)	2
	단과대학 또는 학과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위원회, 교육사업 등) 기획 및 집행자	10
	도서관 주관 재학생 대상 독서 프로그램 지도(학기당 1회이상) (도서관장 확인서 제출)	5
	관련기관에 대한 학과 홍보실적(공공기관, 기업, 고등학교 등과 MOU 체결 <증빙자료 제출>)	2
교외 봉사	학회(문화예술단체) 회장, 부회장	10
	학회(문화예술단체) 임원/간사/위원 등	5
	학회주최학술대회 사회, 좌장 및 토론 1회	3
	테크니컬레포트, 해설, 참관기 등의 게재실적	10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	10
	전국규모 민간단체(산업체) 위원회 활동	5
	교육(평가)인증 평가위원 활동	5
	각종 시험 출제, 채점, 점검, 감독, 면접위원 등 1회	3
	각종 문화예술대전 심사위원 1회(예능계열에 한함)	5
	교원 또는 공무원 연수강의(강습) 및 특강 1회	5
	기타 대외강연(타 기관, 대외연구소, 산업체 등) 1회	3
	국제기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0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임직하는 경우	15
	방송활동(출연) 1회	3
	의료봉사활동	5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후 중 활동기간이 명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년간의 활동으로 종료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매학기 업적을 등록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종교 활동, 대학 내외의 친목을 위한 단체, 기관 및 단체의 1회성 평가, 타 대학 교원 임용 심사, 입학전형심사, 각종 논문심사, 신문 기고, 1회성 인터뷰 등은 인정하지 않음.

[별표 6] 학술발표 인정기준 <신설 2013.10.17.> <개정 2014.6.11.>

구분	항목	비고
국내	학술발표논문(Full Text)	KRI 연동
국제	학술발표논문(Full Text)	KRI 연동

※ <삭제 2014.6.11.>

[별표 7]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기준 <신설 2013.10.17.> <개정 2019.10.24., 2020.8.27., 2024.8.12., 2026.8.31.>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 평가 기준
학생지도 (50+ α)	개인지도 (학생상담 및 전공세미나 지도)	20	기본점수 10점(20명까지) 학생수 1명 증가 시 : 1점
	집단지도	10	기본점수 5점 고시반지도 : 3점 동아리지도 : 3점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지도 : 3점 행사지도(학교, 학과 주최행사) : 1회당 2점
	취업지도	20	기본점수 5점 취업(4대보험가입) : 1명당 5점 진학 : 1명당 5점 학과홍보(취업지원) 위한 기업체방문 : 1회당 2점(최대 6점) 기업체 초청 취업설명회 주관 : 1회당 3점(최대 6점)
	석·박사 논문지도	보너스점수 + α (최대 5점)	석사 : 1명당 1점 박사 : 1명당 3점(공동지도교수가 있는 경우 2점) <공동지도교수> 석사 : 미인정 박사 : 1명당 1점
복무 (50)	교원준칙 제3조 1항 (주당 4일 복무)	10	주당 1일 부족 : -5점 (책임시간 6시간 이하 시 학생상담시간 배정)
	교원준칙 제3조 3항 (타 대학 출강)	5	허가원 미제출 : -5점
	교원준칙 제11조 (학기 중 국내외 여행)	5	허가원 미제출 : -5점 허가원 제출기간 미준수 : -2점
	교원준칙 제10조 (행사, 회의 참석)	10	대학·학과교수회의 불참 : 1회당 -3점 학교행사 불참 : 1회당 -5점 의무교육 불참 : 1회당 -5점
	교원준칙 제14조 (대학행정에의 협조)	10	대학 행정 협조 요구 미이행 : 1건당 -5점
	봉사	10	※봉사업적 점수로 평가(최대 10점)
만점		100	

※ 학교행사 및 의무교육(연수 등)에 연평균 80%이상 참석 필수

※ 2026. 2. 28. 까지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